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653**

제출연월일 : 2023. 4. . .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가. 풍산동에서 미사3동으로의 행정동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궁심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미사3동 신설 및 풍산동 삭제 나. 미사3동 일부 관할구역 추가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2. 3. 2. ~ 2022. 3. 22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
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풍산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행정운영 동 명	동장 정수	구 역(관할 법정동)
미사3동	1	당산동 일원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BL1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BL2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BL3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0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1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2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3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4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5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6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27BL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 A-32BL업무9업무8자족 5자족 6자족 7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풍산동의 동명란 중 "풍산동"을 "미사3동"으로 한다.

②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의 풍산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란 중 "풍산동 행정복지센터"를 "미사3동 행정복지센터"로 한다.

별표 2 중 미사보건센터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미사1동, 미사2동, 미사3동

J	부 서 명	자치행정과				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최 용 호				
	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팀장 강 학				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경 준 (790-5409)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	현		행		개	정	안
	1	1				ı	
행정운영 동 명	동장 정수	구	역(관할 법정동)	행정운영 동 명	동장 정수	구	역(관할 법정동)
풍산동	1	하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	지역현안사업1지 2 지역현안사업1지 3 기사공공주택사 P A-20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1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2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2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4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5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5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6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7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7BL 기사공공주택사 P A-27BL	미사3동	1	 업무용 자족 7	5

관계법령 발췌서

1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· 면 · 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